
第17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文教保社委員會會議錄 第6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9年12月21日(火) 午後2時

場所 文教保社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文化藝術振興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靑少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4. 1999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2. 서울特別市文化藝術振興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11面
 3. 서울特別市靑少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17面
 4. 1999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 55面
-

(14時 40分 開議)

○委員長 李英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特別市議會 제17회 정기회 제6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날씨가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는 오늘과 내일 조례안을 심사하고 나머지 이틀은 현장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委員長 李英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盧美惠 女性政策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李英順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정책분야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를 他 市·道の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인상하여 세입·세출의 불균형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이미 받은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여성발전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의 인상으로 기술교육 및 생활문화교실 수강료는 1인 월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아동보육료는 1인 월 5,000원에서 7,500원으로 인상하고, 수영수강료는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우나 등 부대시설이 없어 사설수영장보다 경쟁력

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수강료는 변동 없이 이용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용료가 인상되었지만 기술교육 수강자 중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실직 여성 및 실직자 가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혜택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사용료 반환기준이 없어 교육개강일 이후에는 이미 받은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강일 또는 시설이용일 전까지 이용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개강일 또는 시설이용일 개시일 이후에 이용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월을 제외한 잔여월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여성발전센터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英順;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尹炳國; 專門委員 尹炳國입니다.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

報告書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英順;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成奎委員님.

○金成奎 委員;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봅시다.

생활문화 수강시간을 1일 2시간 이내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전에 지금까지는 3시간 이내였는데 2시간 이내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고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규정은 현행 1일 3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2시간 이내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2시간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金成奎 委員; 이상입니다.

○許光泰 委員; 거기에 관련해서 그러면 1일 3시간 이내인데 1일 2시간을 그 동안에 관례적으로 해 왔다는 얘기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許光泰 委員; 그런데 2시간 이내라고 한 것은 1시간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許光泰 委員; 그럴 수도 있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許光泰 委員; 그런데 그럴 수 있다면 수강료 사용료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의미부여를 어디에다 두어야 돼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만일 1시간 강의를 할 때는 감을 해 줍니다, 비율로. 지금 몇 시간 이내, 며칠 이내로 돼 있는 것에서 그것이 기준에서 반이 될 때는 반 감을 하게 되고, 1/4 이면 1/4 감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許光泰 委員;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러니까 시간단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 5일 기준으로 할 때 주 4일을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될 경우에는 20%를 감해서 1만원에서 8,000원을 받는 것으로, 맥시멈으로 해 놓고요. 지금 기준이 맥시멈이고 그 시간보다 짧게 하거나, 또 주 횟수가.....

○許光泰 委員; 아, 시간에 따라서 차등 수강료 징수를 한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렇습니다.

○許光泰 委員;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조례안 3쪽입니다. 별표 아래에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이 나오고, 아래에 수강료 및 보육료는 강의·보육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는게 들어가 있습니다.

○委員長 李英順; 許光泰委員님, 끝났습니까?

○許光泰 委員; 네.

○委員長 李英順; 李東秦委員님.

○李東秦 委員; 역시 동일한 문제인데요. 지금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시간단위로 보면 인상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3시간 기준으로 해서 7,000원 받을 때는 시간당 사용료가

2,333원 정도인데 2시간 단위로 해서 1만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시간당 사용료가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 이상이 인상되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타 시설의 수강료와 비교해 봐서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비교를 해 본 결과가 있으면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2시간을 하더라도 월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주에 관계 없이 7,000원을 받았습니다.

○李東秦 委員; 예전에는 탄력성이 없이 1시간을 하더라도 7,000원씩을 받고.....

○女性政策官 盧美惠; 3시간을 해도 7,000원 그렸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李東秦 委員; 이런 생활문화 강좌를 하는 타 기관이나 시설에 비교했을 때 수강료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8쪽에 나와 있습니다. 8쪽에 기술교육이 인천하고 대구의 경우에는 1만원으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교실도 인천하고 대구의 경우에는 이미 1만원씩으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일반시설하고는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일반시설은 지금 민간으로, YWCA 근로여성회관 같은 데는 1인 월 4만 5,000원에서 18만원까지 수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의 경우는 그렇고요.

생활문화교육의 경우에는 지금 1만원에서 4만 5,000원의 수준, 또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다른.....

○李東秦 委員;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이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가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낮다고 말씀을 하실 줄 저희는 알았습니다만.....

○李東秦 委員; 다른 생활문화강좌를 하는 다른 기관하고 비교를 안 해 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인상률이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주고 그 내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렇습니다.

○李東秦 委員; 수영장의 경우 말이에요,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늘린다고 해 가지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지요, 시설 개선하는 비용이?

○女性政策官 盧美惠; 안 돼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시설보강이 뒤따라야지, 수영장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시간을 늘린다 그래서 많이 오는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2001년도에 보수하는 예산을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秦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英順; 劉俊相委員님.

○劉俊相 委員; 보육료에 관해서요. 5,000원에서 7,500원으로 인상을 했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劉俊相 委員; 그런데 타 市·道에 보면 1만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99년 1월 1일.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렇지요.

○劉俊相 委員; 그런데 왜 1만원으로 안 올리고 7,500원으로 올렸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인상을 생각해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수강료는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데 보육료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릴 때는 100%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50% 수준으로 7,500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劉俊相 委員; 이 어린이들은 누가 와서 맡깁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교육생들이요. 교육생들도 있고, 수영장은 서부여성발전센터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강생들이 자녀를 데려와서 맡기는 케이스입니다.

○劉俊相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英順;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女性政策官님, 기술교육과 생활문화교육의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이 수강료를 받는 이유가 뭐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생활문화는 생활이 지금 주 1회 2시간 이내고, 기술교육은 3시간 이내 주 5회입니다.

○委員長 李英順; 그러니까 그것이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7,000원 받다가 1만원 인상한다 하더

라도 월 1만원이면 그냥 커피 두 세잔 값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기술교육을 주 5일씩 이렇게 하면서까지 1만원을 받는 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시럽이긴 하지만 일정하게 시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일정한 이용자들의 책임성 이런 것들이 부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생활보호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강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의 현실성을 가져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월 1만원이라고 하면 커피 한 두잔 값밖에 안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연차적으로 저희가 인상하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기술교육 수강생들은 저소득층이 더 많고요.

생활문화교육을 수강하는 여성들은 조금 수준이 높은 부분이고요. 공공기술교육이나 기술교육부분은 정부에서 조금 지원해야 되는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생활문화교육 쪽은 자부담 쪽이 좀 많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철학이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委員長 李英順; 올해 어떤 시설에 우리가 가봤지만 절대 어려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현장에서 다 뛰고 있고,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다 기술 내지 생활강좌에 다 몰리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정하게 사회에다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임성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연차적으로 올리는 안을 저희가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차이가 기술교육하고 생활문화교육하고 교육생 스스로도 차이는 납니다. 좀 더 기술교육 쪽이 저소득층이고요. 그러니까 생보대상자나 이런 수준이 아닌 그 윗단계

에 좀 저소득층이고 생활문화교육 쪽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생활여유가 있는 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술교육 수강료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생활문화교육도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만, 1차년도기 때문에 저희가 한 40% 수준으로 인상을 지금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委員長 李英順; 앞으로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英順;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女性發展센터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뒤에 실음)
.....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4時 59分 會議中止)

(15時 04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英順;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2. 서울特別市文化藝術振興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委員長 李英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文化藝術振興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金承珪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文化觀光局長 金承珪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옵는 李英順 委員長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림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16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거 전보발령된 문화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金尙範 文化課長입니다. 문화과장은 그 동안 600년사업담당관, 심사분석담당관, 건설행정과장을 거쳐서 용산구 재무국장으로서 근무하다 금번 저희 국 주무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文化藝術振興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한 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 심의기준 중 일부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과 관련하여 시정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건축위원회 분과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동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한 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여 작품의 예술성을 작품의 예술성(형식미, 내용미, 독창성)으로, 또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을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환경과의 친화성, 설치 위치의 적절성)으로 변경하고, 기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중요사항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심의기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건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윤번제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서울特別市文化藝術振興에관한條例에 의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시정개혁 차원에서 재정립하여 통합된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필하고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의견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제출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英順;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

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尹炳國; 專門委員 尹炳國입니다.

서울特別市文化藝術振興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 부분입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文化藝術振興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英順;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禮子委員님.

○李禮子 委員; 전국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0인의 위원을 갖도록 하고 13인 이내의 또 위원을 구성해서 윤번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그것이 돌아갈 때마다 그 위원회의 시의회 의원이 한 분이라도 꼭 참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저희 조례는 50인 이내로 구성되도

록 되어 있고 현재는 4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이 세 분 포함해서 마흔 일곱 분이 계시고, 그러면 이 중에서 저희가 추출을 해서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 열 세분을 거기서 차출을 해서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면 하고, 그 다음 번 또 회의를 할 때는 그 열 세분 빠지고 나머지 분 중에서 또 열 세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전에 그 위원들이 상대방에 노출이 안 돼서 사전로비라든가 이런 것을 막고 투명성 있게 운행하자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문제가 과거에 제기돼서 이와 같이 개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번에 개정안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조항은 다른 조례에 건축조례, 이런 데에 없다고 그래서 빼는 것으로 했지만 저는 그 대신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한번 돌아갈 때 한 분씩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객관적으로 보살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李禮子 委員; 저는 그것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英順;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成奎委員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金成奎 委員; 李禮子委員님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인데요.

그러면 매 심사때 마다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선출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13인 이내 현행 조례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2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했는데 그

렇다면 이제는 당연직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 자체가 없습니까?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아니 50인 이내로 분과위원회는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따로 두지를 않습니다.

○金成奎 委員; 그 50인 중에서 현행 조례는 50인 중에 위원장, 부위원장은 항상 13인이 새로 구성될 때마다 포함이 되었었던 모양이죠?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네.

○金成奎 委員; 그러면 50인 중에서 13인의 위원을 구성할 때 회의개최하기 며칠 전에 합니까, 위원회 구성은?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심사해서 일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金成奎 委員; 심사하기 일주일 전에?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네.

○金成奎 委員; 그러면 50인 중에서 그냥 순번제로 가나다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할 때는, 지금 현재 47인인데 그 중에서 열세 분을 저희가 누구누구를 이번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번 그분이 지나가시면 그 다음번에 할 때는 그 열세분 한 번 하신 분은 빼고 나머지 중에서 또 열세 분을 무작위로 저희가 추출을 합니다.

○金成奎 委員; 그리고 개정안 제23조, 아까 우리 李禮子委員님께서도 건의를 했는데 제23조제3항을 하나 신설해서 우리 서울시의원 5인이 포함되는, 저 역시도 그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英順;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金星煥委員님.

○金星煥 委員; 서울시議會 의장이 추천한 명단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네, 갖고 있습니다.

○金星煥 委員;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지금 현재 市議會에서 추천받은 분이 세 분 있는데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지금 좀 쥐 보세요.

기존 조례에는 5인 이내라고 되어 있지 않는데, 5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3명이 추천돼 있어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 때 당시에 議會에서 세 분만 추천을 해 주셨답니다, 이것 구성할 때.

○金星煥 委員;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임기가 내년 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英順;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5時 19分 會議中止)

(15時 5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英順;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星煥委員님.

○金星煥 委員; 간담회 중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서울特別市文化藝術振興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바, 이번에 올라온 개정조례안이 쟁점이 여러 가지이지 않긴 하나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해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나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서 차제에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추후에 재심의할 것을, 그래서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李英順; 그러면 金星煥委員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서울特別市文化藝術振興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金星煥委員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議事棒 3打)

서울特別市文化藝術振興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金星煥委員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特別市文化藝術振興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3. 서울特別市靑少年委員會構成 및 運營條例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時 52分)

○委員長 李英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靑少年委員會構成 및 運營條例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金承珪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다음은 서울特別市靑少年委員會構成 및 運營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96년 10월 5일 조례 제3332호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 보호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청소년보호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에 다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자문, 청소년보호·건전육성 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에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이 되겠고, 다음은 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였습니다. 현행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서울特別市 文化觀光局長,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特別市議會 議員, 관계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市長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내용은 위원장을 2인으로 하되 行政1副市長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공동위원장이 되고, 그들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에 서울地方檢察廳 少年부 부부장검사, 서울特別市 地方警察廳 방범부장, 서

울特別市 教育廳 教育政策局長, 서울特別市 保健福祉局長, 또 文化觀光局長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서울特別市議會 議員, 相關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 유해환경 相關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와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한 풍부한 자 중에서 市長이 위촉하는 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市長이 위촉하고,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市長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기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와 전문적인 조사·연구, 검토의견서 제출과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제의 실무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안전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감시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안건의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9세 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英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尹炳國; 專門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靑少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靑少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英順;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李東秦 委員님.

○李東秦 委員; 靑少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文化觀光局長에게 오늘 끝난 문예진흥기금 심의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문예진흥기금 심의를 하면서 가장 중시했던 것은 기금 심의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번에 심의하는 문예진흥기금만큼은 가능한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도록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배제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심의를 죽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우리 위

원회의 감사 때 문예진흥기금과 관련한 가장 잘못된 기금지원사업의 하나로 여성문예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장께서 심의에 참석해서 특정단체의 특정사업에 대해서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00만원의 기금지원 내용을 초과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국장께서 심의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했던 본위원을 포함해서 심의위원회의 절차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이미 감사 때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로 지적된 여성문예원에 대한 기금지원이 잘못되었다고 이미 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장께서 나오셔서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면서 증액을 요청한,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본위원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조하고 적용하려고 했던 원칙과 기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모멸감을 느꼈었어요, 제가.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고, 국장은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 개인 자격으로 온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제가 지난번에 바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와 같은 누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특별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추가적인 어떤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해서 완전히 앞으로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처음에 지원을 할 때 모든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고, 그 후에는 일체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그것은 실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이 사업비가 8,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결과물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 걱정한 지원액 그것은 개인위원의 자격으로서, 저도 거기 하나의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입장서 봤을 때는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적당하고 그 이상 더 추가적인 요구가 들어올 때는 작년과 같은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단호하게 잘라야 된다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위원회 자격으로서 들어가서 마침 기금에 여유가 있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금년과 같은 추가적인 요청 들어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딱 자르고 앞으로는 어느 것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李東秦 委員; 앞으로가 아니라 잘못되었으면 지금부터 그것이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왜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아니, 앞으로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적으로.

○李東秦 委員; 추가적인 신청문제는요. 그것은 그 문제인 것이고, 지금 기금심의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1차 의결이 된 것 아니에요? 300만원 지원하기로 하향 조정해서 대폭 조정

을 해서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이미 작년에 편법을 동원해서 이미 1차 심의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후에 그 동일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의 추가요청을 서면으로 해서 서면동의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단체의 동인지에 2,000만원이라고 하는 최고액수를 지원했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뭔가 과정이 잘못된 것이고, 지원규모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거기에 기초해서 300만원을 대폭 하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런 과정이 잘못된 과정이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에 기초해서 페널티가 가해져야 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국장께서 나서서 증액, 그것도 뭐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대폭 1,000만원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발언한 저의가 뭐냐 이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감사 때 지적한 사업 아니냐 이말이에요?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따로 국장께서는 개인자격으로, 심의위원 자격으로 발언한다 이말이에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추가적으로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李東秦 委員; 잘못되었으면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지.....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래서 앞으로 일체 추가적인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李東秦 委員;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에 심의를 결정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렇죠.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적정한 금액을 우리가 반영을 해주고 그 대신 추가요청하는 것은 잘라야 되지 않겠느냐 순수한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 이 기금이 앞으로 올바르게 운영이 되겠다는 그러한 순수한 뜻에서.....

○李東秦 委員; 그렇게 하면 올바르게 운영이 됩니까?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작년에 잘못 집행된 기금,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집행된 기금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평가와 거기에 따른 페널티가 가해져야 될 대표적인 사례로서 지적된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께서 증액을 요청한 저의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거예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위원님, 그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30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자꾸 그런 추가요청하는 악순환이 생길 것 아니냐.....

○李東秦 委員; 지금 수백개의 사업이 기금요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청된 사업규모에 비교해서 기금요청한 것 그것이 제대로 다 반영된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각 사업에 제대로 하려면 다 모자라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 모자란다고.....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단체에서 지난번처럼 자꾸 2,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잘라야 되는데.....

○李東秦 委員; 또 요청할지 모르니까 미리 주어버리자 이런 말씀이에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러한 것을 하지 말고, 왜냐면 우리가 걱정한 사업비가 안 되다 보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자꾸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들어오다 보면 작년과 같은 또 누가 범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수한 뜻에서.....

○李康珍 委員; 국장님,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의 문예진흥기금을 심의하는 이유가 뭐죠?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

○李康珍 委員;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냥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요청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금액이 작으면 지원을 요청한 기관에서 때를 쓰고 엉뚱한 소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때를 쓰고 엉뚱한 소리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아니, 왜냐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 지난해에 지원해 주었던 기준을 상당히 참고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금년에 좀 줄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아마 작년하고.....

○李康珍 委員;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사업에 대해 충분하게 지원을 안 해 주면 때를 쓰고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엉뚱한 소리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만원 해 주기로 했던 것을 1,000만원으로 해 주기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아니,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어느 금액을.....

○李康珍 委員; 아니, 작년이 문제가 아니고 방금 국장이 말씀하신 것 뭐라고.....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적절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절한 선을.....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적절한 것이든, 충분한 것이든간에 상관 없이 국장님 방금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적절한 만큼을 해 주지 않으면 그 기관에서 때를 쓰고 엉뚱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심의위원회 개인자격으로 1,000만원 정도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네.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를 심의위원들이 300만원을 주자라고 하면 그 업체에서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때를 쓰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다?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미리 준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적정, 작년에 2,000만원 나갔단 말입니다.

○李康珍 委員; 속기록 뽑아볼까요?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위원님, 2,000만원을 주었던 사업을.....

○李康珍 委員; 그 이야기는 안다니까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사업을 갑자기 대폭 300만원 했을 경우.....

○李康珍 委員; 지금 李東秦委員님께서 질의하시는 요점이 뭐

나 하면, 질의하신 요점은 문화관광국장으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에 대한 원칙과 태도가 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원칙과 태도가 때를 쓰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데는 조금 더 주자, 이것이 아니잖아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자르자는 얘기입니다.

○李東秦 委員;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작년에 3,000만 원이 지급된 사업에 대해서도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사업에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위원들께서 판단.....

○李東秦 委員; 그것은 서울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서 적절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푼도 지원 안 한 거예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수년 동안 계속 지원되었던 그런 사업조차도 이번에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상당수의 대상사업에 대해서 기금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이만큼 이번 심의과정에서는 뭔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께서 느닷없이 오늘 오셔서 그런 원칙과 기준을 깨뜨리는 발언을 스스로 했다 이말이에요.

나는 그것이 국장으로서 해야 될 태도냐라고 지적하는 것이고, 심의위원회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은 의회에서 지적된 문예진흥기금의 잘못된 기금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

그런 예였는데 그것을 뒤집는 발언을 개인적인 자격으로 발언을 하셨다 이말입니다.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아닙니다. 저는 위원의 자격으로서 발언한 것입니다, 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의 자격으로서.

○委員長 李英順; 이미 결정난 거잖아요? 결정난 건데 왜 또 뒤집어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아닙니다. 오늘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에 했던 것도 금액이 적게 나간 그런 것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오늘 심의를 하고 하자, 왜, 총 재원 중에서 1억원이라는 것이 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원 안 해주기로 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심의를 해보자, 아까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李東秦 委員; 국장님, 작년 문예진흥기금 심의과정에서 여성문예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어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알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문제가 돼서 보류하기로 했어요. 기금지원을 거기서 하지 않고 일단 보류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1,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갔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1차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문화관광국에서 서면동의를 위원들한테 다 받았어요. 총액 작년에 2,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이 과정이 올바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기금이 지원된 것입니까?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아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李東秦 委員; 아니죠?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네, 그렇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말이에요. 또는 지원이 안 되든가, 나는 지원이 안 돼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액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감액해서 결정한 사안이란 말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란 말이죠.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래서 위원님, 저도 차라리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고 그런다면 아예 그것이 지원이 안 되어 버렸으면 차라리.....

○李東秦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평가를 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거기에 적용한 원칙과 기준, 이것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주무국장으로서의 태도 아니냐 이말이에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글쎄, 그런데 저도 아까 위원으로서 봤을 때 이 사업이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제외를 하면 좋은데 300만원을 준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이것 가지고 뭘 하려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작년엔 어차피 잘못되게 2,000만원이 나갔다면 금년에는 1,0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고 더 이상 앞으로 추가 신청하는 것은 딱 잘라버리자, 그래야 앞으로 이런 잡음이 없고 우리가 이것을 공정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순수한 뜻에서.....

○李東秦 委員; 기금을 대폭 삭감한 게 이 사업만이 아니라 전액 삭감한 부분도 있고, 이와 유사하게 대폭 삭감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局長께서 그런 과

정과 이 절차에 적용했던 원칙과 기준을 여기면서, 그리고 스스로 主務局長으로서 이 원칙을 여기면서 발언을 하고......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위원님, 아까 제가 순수한 뜻에서 말씀 올리는 것이라고, 왜, 작년에 이것이 문제가 됐던 사업으로 제가 전에 議會로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李東秦 委員; 지적을 받았으면 그것을 존중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아니지요. 그와 같은 누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걱정한 사업비를 해 주면서 다시 추가로 요청하는 이러한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원칙을 우리가 만들자는 뜻입니다.

○張鎭國 委員; 局長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액수가 많은 적든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맞습니다.

○張鎭國 委員;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그 사업에 지적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했으면 이번에 심의위원들이 1,000만원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을 500만원으로 결정하든, 300만원으로 결정하든 일단 결정을 했으면 그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조금 전에 나도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했다 그러지만 그 심의위원의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 이전에 主務局長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300만원밖에 지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때를 쓰고 돈을 더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主務局長의 입장에서 200만원을 더 얹어 주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면 앞으로 우리 局長님 마음대로, 입맛대로 이 기관은 이렇게 좀 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되겠다, 이 기구는 이렇

게 해서 좀 더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영향력을 행사해서 얼마든지 작용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잘못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局長이 사랑하고 局長이 아끼고 局長이 그래도 뭔가 도와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단체는 그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저의가 지금 여기에 비추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위원님, 그런데 절대 그러한 뜻에서는 아닙니다.

○張鎭國 委員; 본인 자신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뉘앙스가 그런 식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언행을 굉장히 조심하고 함부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主務局長이라고 해서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알겠습니다.

○張鎭國 委員;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알겠습니다.

○張鎭國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심하시라고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마침 그 1억원을 가지고 이것을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 이것은.....

○委員長 李英順;金星煥委員님에게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金星煥 委員; 이 여성문예원에서 신청한 게 동인지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것인가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네, 여성문예지.

○金星煥 委員; 제가 기억이 확실치 않지만 동인지를 만드는 데 지원을 한 게 대체로 300만원을 넘지 않았던 것 같은데,

300만원, 많아야 500만원이었을 텐데, 그 이상으로 지원된 데가 여성문예원에서 만드는 동인지 말고 그와 유사하게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지원된 데가 있었어요, 작년에?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릅니다만 그 성격에 따라 가지고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星煥 委員; 제가 그것을 봤더니 백 몇 십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런데 부수가 지금 1만부를 자기네가 발행을 한다면서.....

○金星煥 委員; 돈만 있으면 저희 동네 동인지도 그렇게 해요, 돈만 있으면. 누구는 하기 싫어서 몇 만부씩 안 찍어요. 서울시 돈으로 몇 만부씩 찍으라고 그렇게 주냐고요? 그것이 문화예술 진흥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성문예원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성격의 동인지를 내는 데 500만원 이상 지원한 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것은 추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추후에 답변이 아니잖아요.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어떤 동인지는 몇 만부 발행하니까 2,000만원 주고, 어떤 동인지는 몇 만부 발행하기 싫어서 300만원 주나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것은 사업의 신청규모가 있습니다.

○金星煥 委員; 사업의 신청규모 다 가져와 보세요. 제가 봤어요. 일일이 봤더니 대부분 다 사업의 신청규모가 몇 천만원, 몇 억원씩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까 동인지는 대개 300만원씩 주더라고요.

사업의 신청규모가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은 게 아

니예요. 대부분 큰데 우리 기준에 따라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3,000만원 이하로 주든지, 동인지 같은 것은 대개 300만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필 여성문예원만 2,000만원씩 주고, 300만원으로 원칙대로 적용해 놓았던 것을 왜 다시 올리려고 했느냐고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볼 때 2,000만원 나간 것이.

○金星煥 委員; 1,000만원 나간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 아니예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글썬요, 저는 그렇게…….

○金星煥 委員;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局長님은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동인지는 300만원을 주었는데 이 동인지만 특별히 1,000만원을 주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 사업의 규모로 봐서 그렇다고요.

○金星煥 委員; 사업규모가 무슨 뜻이냐고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총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金星煥 委員; 다른 동인지는 그렇지 않느냐고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것은 좀 적게 총 사업비가…….

○金星煥 委員; 그 자료 다 가져와 보세요. 최근에 3년 동안 동인지와 관련해서 신청한 자료하고 집행액수 전체를 가져와 보세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네.

○金星煥 委員; 제가 속해 있는 동인지더라도 부수 많이 내고

싫어요.

그것은 다 자기 동인지의 작품성이나 문학성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 규모를 정한다고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알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2,000만원씩 지원하면 저라도 몇 만부씩 내지요. 그것이 문화예술 진흥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해 나갈.....

○金星煥 委員; 그러려면 300만원에서 멈추는게 맞지요. 다른 동인지라고, 나도 1만부 내겠다, 나도 1,000만원 달라 그러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금년도 사업계획이 그렇게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金星煥 委員; 그것 확인하셨어요? 지금 확인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감사 때 다 봤어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하여튼 이번에 들어온 것 중에서는 이것이 제일 많았습니다, 사업규모가. 다른 것의 배 이상 되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없도록 명심해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東秦 委員; 답변이 궁색해지잖아요. 局長께서 가장 누구보다도 주무 책임자로서 원칙과 기준을 명백히 제시해야 될 그런 입장에 계신 분이 그것을 무시하는 발언을 오늘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가장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저는 첫날부터 와 가지고 다른 심의위원들하고 싸워가면서

그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애를 써 왔는데 마지막에
가 가지고 局長께서 딱 하시는 발언이 더 올려주자라고 그랬
어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위원님, 제가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것
은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공정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자꾸 추가요구하는 그런 사태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고
해서 하는 그런 방안으로서 그 사업의 총 규모를 봐서 이 정
도로 해 주면 앞으로는 그러한.....

○李東秦 委員; 됐어요. 그런 답변은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
가 아니고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하여튼 어떤 사심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英順; 앞으로 文化觀光局長께서는 이 문제가 간단
한 문제가 아니라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英順; 동인지를 만드는, 책을 발간하는 부분에 관
해서는 문화예술이 아니라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그것도 7,000원을 받으면서 유가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
을 서울시민의 세금을 지원을 해 가지고 발간하도록 부추기
는 행동밖에는 안 되고, 특정한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생
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적을 해서 전혀 지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으로 축소를 하고자 결정한 부분을
다시 뒤집는다라고 하는 것은 文化觀光局長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시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
제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문제를 저질러놓고 앞으로 안 하겠
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책임성 없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위원장님, 아까 말씀 올린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심이나 누구로부터 압력을 받았거나 결탁을 했던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委員長 李英順;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건이 한두 건입니까?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러나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것이 설사 위원의 자격이라 하더라도 文化觀光局長으로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심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내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局長께서 마지막에 남아 있는 금액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단체 외에 증액을 또 해 주자고 했던 데가 있습니까?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딱 데도 있습니다. 아까 서로 위원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청소년쪽에 필요하다.....

○金星煥 委員; 아니, 局長께서 얘기한 게 있으시냐고요? 여성문예원 외에 더 증액해 주자고 얘기하셨던 데가 있느냐고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아닙니다. 저로서는.....

○金星煥 委員; 그것 하나 얘기하셨어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것 한 부분입니다.

○金星煥 委員; 局長께서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집행돼서 떼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려 주자고 했는데 혹시 처음에 감액조정된 이후에 여성문예원측으로부터 예컨대 금액을 조금 상향조정해 달라거나 이러한 요구를 받으신 바 있나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전혀 없습니다.

○金星煥 委員; 그러면 알아서 그렇게 마음속에 우러나서 그렇게 하셨나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제가 볼 때 이것이 작년에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라고 그래서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에 할 때 적당한 수준을 주고 그 후에 추가요구를 하는 것은 일체 잘라야 된다 그런 순수한 뜻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東秦 委員; 내가 첫날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30분을 싸운 사람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 무슨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기금심의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30분을 싸운 사람이에요.

局長이 마지막 날 와 가지고 딱 뒤집어 놓은 것 아닙니까? 뭘니까, 이것이 도대체?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위원님, 결과적으로 그렇게 받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 안을 한번 상의를 해 봐 주십시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자꾸 불협화음 나오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것으로 해 주고 추가적인 것은 받아주지 말자 그런 대원칙을 저는 세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英順; 하여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英順;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靑少年保護委員會라고 하는 명칭을 두고자 하는데 보호자를 집어넣는 것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닙니까?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위원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감도 느껴지지만 반대적으로 좀 그래도 어떤 핵심적인 것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청소년보호 쪽에 많은 역점을 두면서 거기에 보호를 하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건전육성 그런 것도 좀 들어가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때 청소년정책위원회 얘기도 나오고 해서 보호위원회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견들이 있었습시다만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委員長 李英順; 보호 자를 넣으면 늘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에도 마치 청소년들을 범죄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 또 보호위원회의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보니까는 마치 청소년들을 다 범법자로 취급을 하듯이 그렇게 검찰청, 경찰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검찰청에서는 학교자녀안심하고 보내기운동 그것을 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사실 청소년들이 그런 데 찾아가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그린존을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업소들이 자꾸 안전감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무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단호하게 처

별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도 같이 여기에 참여해야지 실효성이 더 있지 않겠냐는 뜻에서입니다, 그것은.

○委員長 李英順; 李康珍委員長님.

○李康珍 委員; 지금 서울시의 청소년대책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대책인가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아닙니다. 보호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또 건전하게 즐길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프로그램을 더 확충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울러서 이루어집니다.

○李康珍 委員; 뭔가 지금 자꾸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인천호프집 참사 이후에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니까 호프집에 청소년을 안 보내야 되는 것이 일과만과가 되어서 청소년은 무조건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이 왜 드러나냐면, 여기도 보면 서울시 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 해서 있는데 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제 현황 해서 고3 남학생의 흡연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이 28.2%, 영국은 20.5%, 일본 26.2%인데 우리는 41.6%다, 이것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 이런 것이거든요.

미국은 지금 실제로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라고요.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을 담배가게 앞을 지나가게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뒤에 잘 나와 있잖아요.

현재 서울에 유흥음식점 309개, 단란주점 4,464개소가 주거지역에 산재하고 있다, 그러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하려면 청소년이 길거리에 아예 안 다니도록 하는 것

이 가장 좋은 것이죠, 집안에 가둬 놓는 게. 아니면 학교에 가둬 놓든지, 아니면 저 산 속에 어디 가둬 놓든지, 길거리를 확보하고 다니다 보면 접할 수 있는 것이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여기서 청소년 유해환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뭐 놀이시설, 무슨 가무업소, 놀이업소, 식품위생업소, 이 앞을 안 지나 다니고 청소년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네, 그런 것은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겠죠.

○李康珍 委員; 아니 환경개선은 둘째 문제고, 지금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런데 제안사유에도 보면,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으로 해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문화정착을 위해, 이것이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거든요.

청소년문화정착이라는 것이 청소년 문화가 노래방에서 싹 틀 수도 있고, 게임방에서 싹 틀 수도 있고, 만화방에서 싹 틀 수도 있고, 콜라텍에서 싹 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다 청소년문화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놓고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청소년보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해서 기능을 추가하는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 이것이 과연 정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또 만드는 데 불과한 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그런 여러 가지 청소년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조에 이런 것을 더 포함하자는 뜻입니다.

○李康珍 委員; 국장님, 제가 다 안을 보고 얘기하는 거라니

까요. 안을 보니까 앞에는 건전육성·보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새로 만드는 조례안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원 조례 2조에 보시면 죽 열거된 중에서.....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다 건전육성·보호 건전육성·보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명칭을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위원회로 해야 맞지, 왜 보호 자만 넣어서 마치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는 청소년을 어딘가에 격리수용하는, 보호시설에 격리수용할 의지를 가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잖아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이것은 건전육성·보호 이것이다 들어가는 개념으로, 하려면 그렇게 길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시다.

○李康珍 委員;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이 청소년의 건전육성, 청소년의 보호, 그 다음에 청소년의 새로운 문화환경의 창출과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한 육성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리라고 보거든요, 위원회의 성격상.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네, 알겠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기존에 없던 위원 중에서 청소년유해환경관련 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이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뭐죠? 이 단체를 넣은 이유가 뭔가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왜냐면, 그쪽에서도 혹시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

다 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우리가 업소들만 계속 제재하고 뭐 하는 것보다도 그쪽에서 자기네들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는데도 청소년들이 어떤 행태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거기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단체라든가 시민단체.....

○李康珍 委員;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이전에 구성과 또 달라진 점 중의 하나가 보니까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업소, 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라고 하면 청소년유해환경 관련업소, 단체의 대표나 이런 데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추천한 자라고 하면?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꼭 대표가 들어올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나쁜 업소가 아니라 그와 같은 식품위생업소라든가 그런 데서도 추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李康珍 委員; 유해환경인데 왜 나쁜 업소가 아니에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청소년들이 들어가면 유해하다는 뜻이지, 관련업소가 유해환경을 조성하는 업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우려가 있는 업종 그런 뜻입니다.

○李康珍 委員; 굉장히 규제개혁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려고 했더니 국장님 말씀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여기 보면 조례 제9조에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한다 그래봤는데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에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추천한 사람들 구성되는 인원들 중에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이 여기 들어갈 리는 없을 것이고, 당연

직인 검사나 지방경찰청에 방범부장이나 교육정책국장이나 보건복지국장이나 문화관광국장이 감시단에 들어가서 감시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일정상 여러 가지로 여건상,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죽 이렇게 유능하신 분들 중에서 청소년보호 감시단에 들어가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위원회에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것은 왜냐 하면 그 동안 공무원들이 업소를 갖다 단속을 하는데 밀착해서 결탁을 했다는 그런 것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들 그런 데서도 같이 보호감시단에 참여하고, 그런데 시민단체만 가지고는 또 공권력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경찰, 그 다음에 구청 공무원, 필요하다면 소방서, 학부모 또는 교사 이런 분들 같이 해서 공권력과 또 시민들이 감시하는, 시민들이 한번 단속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결탁할래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시민들께서 현장을 직접 보면서 홍보에도 활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李康珍 委員; 그러면 청소년보호감시단은 위원회에 속한 사람들과 별도로 또 두는 거예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두는 의미입니다, 활동하는 사람.

○李康珍 委員;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에 대한 단속은 경찰청에서 하고 있지요,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시에서 하고 있지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소방서에서 하고 있지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기능별로.

○李康珍 委員; 기능별로, 그죠?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네.

○李康珍 委員; 그러면 여기에 더 해서 청소년보호감시단을 또 만들어서 보호감시단에서도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곳이 바로 성인들이 출입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이 업소에 대해서 다시 단속을 한다? 지금도 경찰청에 가서 청소년들이 출입했는지 안 했는지 주민등록증 검사하고 다 하잖아요. 미성년자 고용했는지, 안 했는지 하고 다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학교안에 200m 내에 있는 유해업소들은 허가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감시단을 또 설치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각 기능별로 하다 보니까 너무 산발적이고 그 다음에 어느 특정결탁이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시민들이 그런 실상을 좀 더 정확히 아는 것도 좋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합동으로 해서 보호감시단에 같이 흡수시켜서 함께 활동을 해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 업무가 추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식을.....

○李康珍 委員; 그것도 보호대책에 보면 6개반 66명 정도로 해서 3일에 1회 근무를 하는데 반당 11명씩을 조직해서 3일에 1회 근무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니폼과 모자, 완장을 지급하고 사복경찰권을 부여하고 이렇게 막 되어 있거든요, 거창하게. 이렇게 11명씩 떼거리로 유니폼 입고 우 지나가면 위해업소가, 얼마 전에 신문

에도 나왔잖아요. 유니폼 입고 완장 차고 모자 쓰고 우 지나가니까 첫 번째 집 단속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싹 문닫아버렸다고, 신문에 난 것 보셨어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네, 봤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런데 이것이 또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또 지급하면 또 돈 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을 왜 자꾸 그냥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어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래서 이런 시민보호감시단에서 365일 지속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업주들 스스로도 좀 더 그런 것을 탈법을 알아듣게 하는 그러한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李康珍 委員; 그것이 지금까지 죽 감시해오고 단속하고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사회전반적인 문화거든요.

청소년의 문화를 왜 인정을 안 하고 청소년 문화를 자꾸만, 이전에 6·25 이후에 내지는 70년대 군사독재시절에 했던 청소년육성보호 자꾸 이 테두리 내에서만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니까 만날 정해 가지고 하면 뭐 합니까?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위원님,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준비해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런 유해업소들 우려가 있는 데를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李康珍 委員; 그런 업소는 아예 허가를 안 해 줘버려야지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렇지요. 거기서 위반되면 아주 완전히 문을 닫게.....

○李康珍 委員; 아니, 처음부터 아예 허가를 안해 줘버려야지

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정말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李康珍 委員;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호프집을 열었다, 매일 저녁에 구청에서 단속 나오고, 경찰서에서 단속 나오고, 청소년보호감시단에서 단속 나오고, 소방서에서 단속 나오고, 장사할 마음 나겠습니까?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아니, 그 집이 잘 하면 자꾸 갈 필요 없죠. 그러니까 위반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李康珍 委員; 잘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하고 있는 집도 갑자기 미성년자가 와서 술 마시다가 걸리면 걸리는 것 아니에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위반 위험성이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인 감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李康珍 委員; 지속적인 감시는 필요한데 그것이 왜 감시단이 청소년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야 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우리 청소년위원회의 정책적인 것도 다루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보호감시단을, 그렇다고 청소년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청소년위원회와 별개로 이런 보호감시단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측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李康珍 委員; 청소년보호감시단은 위원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9조제1항에 위원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 市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

요. 위원회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구만.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회는 실제로 위원회에다 두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런 오해가 있다면 이것은 저희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회에다 바로 둔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李康珍 委員; 그러면 수정을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 조례안 자체가 청소년위원회구성조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청소년 보호업무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에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위원회에 안 두면 청소년 보호감시단은 따로 떼 가지고 청소년보호감시단에 관한 조례나 아니면 청소년기본조례나 이런 것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아닌데.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입안을 한 우리 體育靑少年課長이 더 구체적인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鄭相文; 體育靑少年課長입니다.

위원회조례를 개정하면서 보호감시단을 둔 것은 李康珍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인천사건 이후에 청소년 유해 내지는 위해환경에 대한 단속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법적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말이 인천에서 그런 사건이 났지 우리 서울이 인천보다도 나올 바가 하나도 없고 언제 어디서 어떤 사태가 날지 모르니까 최소한의 그런 사고와 희생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그런존이나 이런 것도 급합니다만 그것도 해 나가면서 우선 사고가 날

수 있는 데를 좀 단속을 해 보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동비도들고 시민단체도 참여해야 되고 경찰도 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 위원회조례에 보호업무를 추가를 하면서, 그래서 법적근거를 확보하자는 게 조례개정의 취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조례개정의 취지는 이해가 된다니까요. 위원회에 설치·운영하는 것인데 위원회에 설치·운영을 하면 청소년보호감시단에, 여기 보니까 청소년 종합대책에 단장은 민간대표, 文化觀光局長, 반편성은 6개반 66명 정도로 구성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體育靑少年課長 鄭相文;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면 이 위원회에 설치·운영하는 것과 보호감시단과는 위원회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고요?

○體育靑少年課長 鄭相文; 그래서 이 보호감시단, 잘 아시겠습니까만 모든 경비가 수반되는 조직이나 직제나 기구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임시적 조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보호감시단의 활동에 따른 그런 근거, 그래서 청소년위원회를 보호업무를 추가를 하면서 보호위원회 속에서 하나의 영구조직은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조정, 그 다음에 운영방향, 집행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康珍 委員; 실질적으로는 위원회와 별개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體育靑少年課長 鄭相文;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자, 이제 위해업소는 얼추 정비가 됐으니까 감시단

의 규모를 대폭 축소를 시키자, 그래서 1개반만 운영하자, 아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더 키우자 이렇게 되면 그런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감시단 규모 내지는 존폐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다가 근거를 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李康珍 委員; 전반적인 이 조례안을 보면 서울特別市 청소년은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범죄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거든요.

○體育靑少年課長 鄭相文; 공감하고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면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된다고 했을 때 이 조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정말 청소년의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청소년 계층이 사회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말 건전육성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體育靑少年課長 鄭相文;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뭐가 있지요?

○體育靑少年課長 鄭相文; 아직까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작업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연초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정말 획기적이고 좀 과감한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프로그램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호측면보다 훨씬 더 비중과 강도가 높은 그런 계획이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위원장님, 제 의견으로는 이 서울特別市靑少年保護委員會條例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靑少年委員會條例에다가 보호업무를 강화시킨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11월 24일에 서울시 청소년보호 특별종합대책이 나온 이후에 상당히 급하게, 충분한 심의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개정되는 조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英順; 또 질의하실 위원님, 崔明玉委員님.

○崔明玉 委員;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시다만 보호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고, 또 이 개념이 여기에 합당한 것인지?

이 보호라고 하는 게 가정에서도 청소년보호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우리 局長께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도 이 보호라는 게 지금 가정에서도 정상적으로 되어지지 않고 있고, 또 경찰 수사권이 있고, 또 그런 공권력이 있는 기관, 그러니까 예컨대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보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서울 市에서 보호를 하겠다는 것인지 좀 얘기 좀 해 보세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조례에는, 제2조 기능에 보면 육성지원에 대한 것은 죽 열거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부분에 대한 것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보호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좀더 보완을 해서.....

○崔明玉 委員; 보호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또는 나름대로 치안에 대한 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일이고 그렇게 해야지.....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그래서 그쪽 파트를 전부 위원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그것을 폭넓게 우리가 논의를 해서.....

○崔明玉 委員; 아, 경찰이나 검찰들이 365일 밤낮으로 해도

그것이 잘 안 되는데 가끔 한번씩 모여 가지고 그것이 무슨 보호가 돼요, 보호가 되기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아니, 우리가 육성과 보호의 방향을 같이 논의해 가지고 검찰은 좀 어떻게 활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경찰은 또 어떻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폭넓게 여기에서 같이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崔明玉 委員; 이와 비슷한 게 과거에 우리 서울시에 있었나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崔明玉 委員;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기대 가능성이 있는, 실효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좋아질 것 같아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불법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차제에 완전히 근절이 되리라고 봅니다.

○崔明玉 委員; 그것은 경찰에다 부탁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구태여 위원회를 설정해서 그런 일을 해요, 여기에서?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찰 단독으로만 해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각 분야 별로 어떠한 역할을, 또 어떤 공조체제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자는 뜻입니다.

○崔明玉 委員; 이것 보십시오. 오히려 교육적으로는 각 교육기관에서, 그리고 어떤 행위에 대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것들은 역시 검찰이나 경찰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모여서, 그리고 서울시가 얼마나 넓은데, 그리고 천백만, 거기에 몇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단속을 한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저는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서울시 文化觀光局, 특히 體育靑少年課에서 할 일은 뭐냐 하면 청소년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안을 마련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맞습니다.

○崔明玉 委員; 예를 들자면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을 확보해 나간다는지 또는 놀이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지 또는 그런 분야의 교육을 강화시켜 나간다는지,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 자기들의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행사를 주관해 간다는지 이런 일들을 해야지, 완장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뭘 단속을 해요, 단속을 하기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위원님, 그 분야도 틀림없이 우리가 특별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그렇게 하면서 보호하는, 우리가 업소에 대해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것도 병행을 해 나가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이 청소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 같다 하는 뜻입니다.

○崔明玉 委員; 그런데 局長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를 둔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 청소년문제를 위해서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재정적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들, 또 뭔가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지역이면 지역에 청소년선도위원회라는 것도

구성되어 있고 이러거든요.

이런 데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 이런 일들이 더 시급한 거예요.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맞습니다. 바로 이 청소년위원회가 앞으로 할 역할이 그러한 것을 검찰에서 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더라 그러한 문제도 같이 듣고 논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지원문제, 또 제도적인 개선문제 이런 것을 폭넓게 같이 논의하자는 뜻입니다.

○崔明玉 委員;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局長께서 공간도 넓혀가고 그런다 그러는데 지금 있는 공간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은 오늘 의제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崔明玉 委員;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李康珍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英順; 崔明玉委員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崔明玉 委員; 네.

○李康珍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딱 지적을 해 드릴게요.

局長님, 여기에 보면 제8조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市長이 위촉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市長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청소년위원회에 학식이 풍부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다 공부 잘 하는 학생들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 구성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文化觀光局長 金承珪;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李康珍 委員; 이 조례안 하나 올릴 때 이런 학식이 실무위원회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委員長 李英順; 오늘 청소년들은 교실이 붕괴될 정도로 굉장히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비추어 봐서 현재 제출된 조례안이 李康珍委員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의하시면서 보류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李康珍委員의 심사보류동의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議事棒 3打)

위원 여러분, 서울特別市靑少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을 李康珍委員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特別市靑少年委員會構成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문화관광국장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4. 1999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7時 02分)

○委員長 李英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우리 위원회에서는 地方自治法 제36조와 서울시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에 의거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여 이미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뒤에 실음)
.....

○委員長 李英順; 오늘 장시간 동안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03分 散會)

○出席委員

李英順 金星煥 張鎭國 金成奎

羅鍾文 徐興善 劉俊相 李康珍

李東秦 李禮子 林浩植 崔明玉

許光泰 洪承采 吉基演 李海植

○專門委員

尹炳國

○出席公務員

女性政策官 盧美惠

文化觀光局

局長 金承珪

體育青少年課長 鄭相文